스위스 피고에 대한 집행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스위스에서의 싱가포르 판결 승인

스위스에 주소를 둔 피고에 대한 싱가포르 판결은 국제사법(IPRG/PILA) 제25조–제27조에 따라 스위스에서 승인됩니다. 요건은 싱가포르 법원이 스위스의 간접관할 규칙에 따라 관할권을 가졌을 것,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거부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PILA 제26조의 간접관할 근거에는 피고의 싱가포르 주소, 유효한 관할합의, 피고의 무유보 응소, 그리고 금전 청구의 경우 반소와의 관련성이 포함됩니다. 응소하지 않았고 싱가포르에 주소도 없는 스위스 피고에 대한 싱가포르 판결은 특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승인됩니다. 당사자들이 싱가포르 관할에 합의했거나, PILA 제129조의 불법행위지와 같은 근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합니다.[1] 거부 사유는 공서 위반, 적법한 송달의 결여, 심문 기회의 박탈, 그리고 이와 저촉되는 선행 스위스 판결입니다.

그다음 집행은 스위스의 채무추심 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 제80조에 따라 이의의 확정적 배제를 신청하며, 스위스 법원은 이 절차에서 부수적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외국 판결을 확정적 집행권원으로 삼아 DEBA 제27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채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권자는 승인 결정 전에 스위스 소재 자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수탁기관이 보유한 토큰에 대해 의제신탁을 선언하는 싱가포르의 물권적 판결은 제III장에서 설명한 개념상 어려움을 낳습니다. 스위스 법원은 금전 지급 부분을 집행하고, 헤이그 신탁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신탁 선언을 그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합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스위스 판결 승인

스위스 판결은 싱가포르에서 커먼로상 판결에 기한 소(action on the judgment)로 집행됩니다. 스위스는 1959년 외국판결 상호집행법(Reciprocal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ct 1959)이 확대 적용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2] 이 소를 제기하려면 국제적 의미에서 관할권 있는 법원이 일정 금액에 관하여 내린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절차 개시 당시 피고가 스위스에 소재했거나 스위스 법원의 관할에 응했어야 함을 뜻합니다. 항변 사유는 사기, 자연적 정의의 위반, 공서 위반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본안을 재심사하지 않습니다. 통상 약식판결 경로를 이용하므로 스위스 판결은 몇 달 안에 싱가포르 판결로 전환될 수 있고, 그 후에는 거래소 잔고의 압류를 포함한 싱가포르의 집행 수단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2016년 관할합의법(Choice of Court Agreements Act 2016)으로 시행된 헤이그 관할합의협약은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에 근거한 판결에 대해 조약상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는 체약국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스위스는 이 협약에 서명했지만 2026년 6월 30일 현재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두 허브 사이에서는 조약상의 경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3]

쟁점	스위스에서의 싱가포르 판결	싱가포르에서의 스위스 판결
법적 근거	PILA 제25조–제27조	커먼로상 판결에 기한 소
조약	없음(루가노 협약 없음, 스위스의 2005년 헤이그 협약 비준 없음)	없음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쟁점	스위스에서의 싱가포르 판결	싱가포르에서의 스위스 판결
관할 심사 기준	스위스의 간접관할(PILA 제26조)	소재 또는 응소
본안 재심사	없음	없음
비금전 판결	승인 가능(확인판결, 명령)	커먼로상 불가; 금전 판결만 가능
보전명령	승인되지 않음	승인되지 않음; 민법(CLA) s 4(10A)에 따라 새로 신청
통상 소요 기간	DEBA 절차를 포함해 6–12개월	싱가포르 판결까지 3–6개월
승인 전 동결	DEBA 제27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가압류	지원형 마레바 명령

주

1. Swiss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PILA; IPRG), SR 291, 제25조–제27조 및 제149조; 불법행위 청구에 대한 간접관할은 PILA 제149조 제2항 f호에 따름. ↩
2. Reciprocal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ct 1959, ss 3–4, Singapore Statutes Online(2026년 6월 확인). ↩
3. Choice of Court Agreements Act 2016, Singapore Statutes Onlin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5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현황표.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